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2017년 4월 pp.157~191

한국세무학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

- 유보소득 사용의 순서효과와 해당 세제의 개선방안 -

손 혁* · 김연화**

〈요 약〉

기업소득환류세제, 즉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배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환류하여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하방경직성이 큰 임금인상보다는 투자나 배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본 연구는 기업이 기업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배당, 임금인상 순으로 유보소득을 사용할 것임을 수리적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그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이해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투자부분이다. 따라서 투자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당기에 투자하지 않고 유보소득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차기투자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처럼 투자액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투자나 주식인수는 투자에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는 제외하여 실질적 투자액만을 인정하여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인상은 투자와 배당에 비해 기업이 수행할 유인이 가장 작으므로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 취지인 가계소득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방법에 있어 현재 3년간 동일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매년 기업에게 재량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외부로 유출된 기부금 등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유보소득, 사내유보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hshaw@kmu.ac.kr, 주저자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강사, happyday4057@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6년 2월 2일 1차수정일 2017년 1월 16일 2차수정일 2017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24일

I. 서 론

본 연구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또는 기업소득환류제도)의 도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을 사례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해당 세제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종전의 지상배당 과세제도, 유보이익증가분 과세제도 및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와 유사한 제도이다. 1991년부터 도입된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는 비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했다. 즉 이전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배당을 촉진하고, 대상 법인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상장법인의 주주 배당소득과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배당 뿐 아니라 투자와 임금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해당 세제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소득이 임금으로 배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소득을 투자나 임금인상 또는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류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업환류세제를 도입하면 투자나 배당 및 임금인상이 없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약 3% 정도 실질적 인상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세제의 절감을 위해 기업은 투자와 배당 및 임금인상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인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음을 모형을 통해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는 달리 기업소득의 환류효과는 경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환류세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을 통해 기업환류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자액임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기업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세액의 절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려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배당에 비해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함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환류세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을 통해 해당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

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환류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한다. 제Ⅳ장에서는 기업환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기업환류과세 제도 개관

가. 기업환류과세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유보소득(undistributed profits)이란 기업의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 배당금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 기업 내에 축적된 부분을 말한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되며, 처분에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사외유출과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 법정적립금과 기업의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의 형태로 기업에 남아있게 된다.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기업내에 적립하면 기업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게 되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적정소득 이상을 유보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즉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내부 유보액을 이용하여 배당소득과세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여 사회적 형평을 이루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최선집, 1998). 하지만 유보이익 과세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유보와 배당은 기업의 정책에 맞춘 경영자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경영에 지나친 간섭일 뿐 아니라 이미 법인세를 과세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사내유보소득의 과세제도 변천과정

<표 1>은 우리나라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과정이다.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적용되었던 지상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법인이 적정수준이상의 유보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았지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6년부터 도입된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의 과세는 주주들이 주식의 양도를 이용하여 내부유보소득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세부담 없이 배당으로 받음으로써 조세회피가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1990년 2월에

폐지되었고 비상장주식의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1983년부터 도입된 비상장대법인 중과는 납입자본금이 50억 원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인보다 3%의 법인세를 더 과세하는 제도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과세제도로서 1991년부터 적용하다가 2001년 12월에 폐지되었다.

〈표 1〉 우리나라 유보소득의 과세제도 변천과정

적용시기	세 목	계 산 방 법
1968년 ~ 1985년	지상배당소득세	- 지상배당소득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유보소득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법인세 등 + 배당 · 상여 등) * 적정유보소득 : 다음 중 큰 금액 ① (소득금액 - 법인세 등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50% ② 자본금(100억 한도)의 5%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상배당소득의 50% 공제
1986년 ~ 1990년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유보이익증가분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과세
1982년 ~ 1990년	비상장 대법인 중과	납입자본금 50억 원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 원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3%의 법인세 중과(최고세율 30% → 33%)
1991년 ~ 2001년	적정유보초과소득 에 대한 법인세	- 비상장법인의 과다 유보액에 대하여 과세 - 자본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 - 적정유보초과소득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관련 개정사항 * 1990년 12월 신설 : 적정유보소득 초과분에 대하여 25% 과세 * 1993년 12월 개정 : 과세율을 15%로 인하 * 1994년 12월 개정 : - 기업발전적립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대상법인을 자기자본총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 - 1998년 12월 개정 : 협회등록법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2001년 폐지
2015년 부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대상소득 : (㉠와 ㉡ 방법 중 선택) × 10% * ㉠ [당기소득 × (60 ~ 80%)] - (투자액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 [당기소득 × (20 ~ 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해당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제도의 유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이중과세라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보다 큰 이유는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을 초과하여 사내 유보하는 경우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실제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하게 되며,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017년에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요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표 2>에서는 각 국가별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요약하였다.

<표 2> 국가별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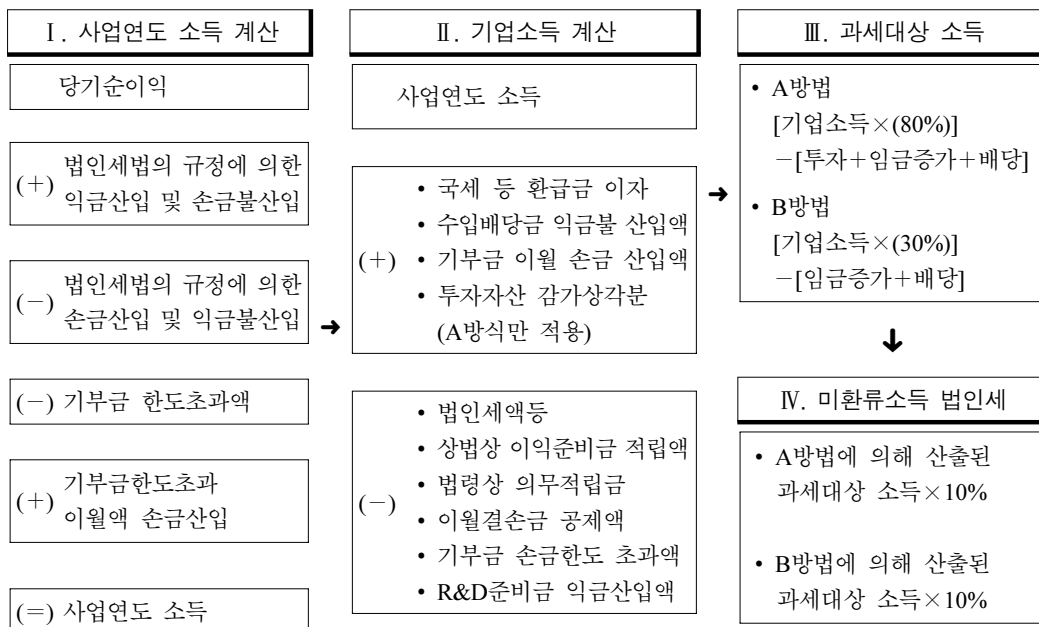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2014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목적	• 주주의 배당소득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성 확립		•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증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 유도
대상법인	• 비공개, 공개법인 (실질적으로 비공개 법인만 대상)	• 동족회사	•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 (중소기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과세대상 금액의 계산방법	• 과세대상소득 = 조정소득 - 배당공제 - 유보이익 공제	• 과세대상소득 = 유보금액 - 유보공제액 (기초 공제액으로 네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	• 과세대상소득 = * ① [당기소득 × (60~80%)] - (투자액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② [당기소득 ×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세율	15%	• 3천만엔 이하 : 10% • 3천만엔~1억엔 이하 : 15% • 1억엔 초과 : 20%	10%
특징	• 자의성 인정 • 탈세목적만을 위한 징벌적 과세 • 법원이 최종판단	• 동족회사에만 적용 • 변협과 세무사협의회 폐지 제안(2005년)	• 세계최초의 기업소득환류세제 • 상장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포함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고, 대만도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 세율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일본은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절차

<그림 1>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법인세 과세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차감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여기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가감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하여 기업소득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기업소득에서 일정률(80% 또는 30%)을 곱한 금액에 사업용 자산등의 투자금액 증가분, 임금증가금액, 주주에게 지급한 현금배당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림 1>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법인세 계산과정



가. 납세의무자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은 내국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실현한 소득에 대하여 투자, 임금 및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있는 기업 가운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중소기업은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나.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표 3>은 기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가산되는 항목과 차감되는 항목이다. 환류세제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소득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금 이자(법인세법 제18조 제4항),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사립학교 등의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및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으로 이전연도로부터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투자대상으로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표 3〉 기업소득의 가산 및 차감항목

기업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산항목 - 차감항목	
가산항목	차감항목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법인세법 제18조 제4항) •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 제 18조의3) • 사립학교 등의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및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중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가산 • 해당 사업연도 투자대상으로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 • 결손금 공제액 •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급여 지급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부금 지출액 가운데 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 조특법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가운데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결손금 공제액,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급여 지급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부금 지출액 가운데 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가운데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각사업연도 소득에 기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이 음(-)인 경우 기업소득은 영(0)으로 계산하면 된다.

다. 미환류소득 및 납부세액의 계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 기업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한 금액에 대하여 A방법을 선택한 기업은 기업소득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계장치 등 세법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임직원의 임금 증가액, 세법으로 정하는 배당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금액 등 세법으로 정하는 금액에 지출한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B방법을 선택한 기업은 기업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증가액과 세법이 정하는 배당액 등으로 지출한 합계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A방법과 B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양(+)인 경우 미환류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서 과세하게 되며, 반대로 산출한 소득이 음(-)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으로서 이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대상 기업은 A방법과 B방법 중 임의로 선택 가능하며 최초 선택에서 적용대상 기업이 A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여야 하며, B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5항). 최초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 등의 대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적용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에 있어 투자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유·무형 자산으로서 운용리스자산은 포함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고, 즉시 상각분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과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과 이에 사용될 토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범위에는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의 산업재산권은 투자금액 합계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만약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 해당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6조 제8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6항, 제17항).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 및 지분투자는 투자액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기업의 환류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증가액은 임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증가액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여 등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된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임원과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및 그의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 등은 제외하여, 총급여액이 1억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자 및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8항, 제9항).

배당액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사내유보금액을 차감한 현금배당과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배당 그리고 분기배당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을 배당액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식으로 배당한 경우는 배당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소각한 경우 그 취득금액을 배당액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0항).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연금액의 범위로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1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세액은 A방법 또는 B방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계산하게 되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계산하게 된다. 만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후 미환류소득으로 공제하였으나 차기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감소로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차기환류적립금 및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을 A방법 또는 B방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환류소득의 적용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6조 제5항 및 제6항).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의 값이 되면 차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게 되며, 음(-)의 값이 발생하게 되면 미환류소득은 영(0)이 되어 추가적 법인세의 납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법인세법 제56조 제5항, 제6항). 만약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에서 차기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의 값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초과환류액이라 하고 그 초과액은 다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6조 제7항).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주는 경제적 효과 및 유보소득에 대한 순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 분석대상기업의 최초시점($t=0$)의 자산(A)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의 비율은 c 이다.
- 분석대상기업은 무부채기업이며(즉, 자산(A)=자본(S)), 2기간만을 분석한다.
-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자산(ex : 자가창설영업권, 인적자산)은 없으며, 재무제표의 자본총액이 주식가치의 합이다.
- 주가는 기업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주주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주주가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t=1$ 기의 당기순이익은 0보다 크다. 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업소득(B)은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 즉 세무조정은 없다.
- 경영자는 투자(I)와 배당(D), 임금인상(Δw)을 $t=1$ 시점에서 고려하며, 투자액과 임금증가액 및 배당은 기업소득(합계액)의 일정비율(q)만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 배당은 배당액 중 대주주에게 일정비율(k)만큼 지급된다(즉 대주주의 지분율은 k).
- 투자액의 수익률(r)은 $B/(1-c)A$ 이다. 즉 기존 비유동자산의 수익률과 동일하다.
- 화폐의 시간가치는 무시한다.
- 기업환류세제가 존재하며, A방법에 의한 일정율은 80%이고, B방법의 일정율은 30%이다.

가. 투자가 없는 경우(B방법 적용시)

만일 투자가 없는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B방식에 의한 과세소득이 식 (1)에서처럼 0보다 작아야 한다.

$$(0.3-q)B - \Delta\omega < 0 \quad (1)$$

이 식을 q 에 대해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q > 0.3 - \frac{\Delta\omega}{B} \quad (2)$$

이 식의 의미는 만일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 배당성향(q)을 이익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 대비 임금인상률($\frac{\Delta\omega}{B}$)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즉 투자가 없는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 대비 30% 이상을 배당과 임금인상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¹⁾

나. 투자가 있는 경우(A방법 적용시)

만일 투자가 있는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A방식에 의한 과세소득이 식 (3)에서처럼 0보다 작아야 한다.

$$(0.8-q)B - I - \Delta\omega < 0 \quad (3)$$

이 식을 q 에 대해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q > 0.8 - \frac{I}{B} - \frac{\Delta\omega}{B} \quad (4)$$

식 (4)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액($\frac{I}{B}$)을 80% 이상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 만일 투자(I), 임금인상($\Delta\omega$), 배당(D)의 비율이 2016년 말 세법개정안대로 각각 1 : 1.5 : 0.5로 변경된 경우 식 (1)은 $(0.3-0.5q)B - 1.5\Delta\omega < 0$ 로 바뀌게 되며, 이를 정리하면, $q > 0.6 - \frac{3\Delta\omega}{B}$ 가 된다. 이 결과는 투자와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 배당성향을 60%이상으로 해야 기업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투자가 없는 경우 임금상승률을 당기순이익 대비 20%이상으로 증가시킨다면 기업환류세제로 인해 배당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

당기순이익 대비 80% 이상을 투자 및 배당, 임금인상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²⁾

다. 투자, 배당 및 임금인상의 순서효과³⁾

기업의 최초시점($t=0$)의 자산(A)과 자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업의 최초시점($t=0$)의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1기간 후($t=1$) 기업소득(B) 발생 후 자산(A)과 자본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1기간 후($t=1$)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B$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기업소득	B

(1) 유보이익을 투자한 경우 각 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t=1$ 시점에서 경영자가 기업소득의 일정비율(q)만큼 투자(I)를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투자 후 자산(A)과 자본(S)은 <그림 4>와 같다. 투자액($I=qB$)만큼 유동자산은 감소하며, 비유동자산은 증가한다.

<그림 4> $t=1$ 시점 투자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B(I-q)$	자본	S
비유동자산	$(1-c)A+Bq$	기업소득	B

- 2) 주석 1과 마찬가지로 2016년 말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식 (4)는 $q > 1.6 - \frac{2I}{B} - \frac{3\Delta w}{B}$ 로 바뀐다. 이 식의 의미는 배당보다는 임금인상, 투자의 순으로 하는 것이 기업환류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본 연구는 기업환류세제의 투자, 배당, 임금인상의 순서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등은 분석대상에서 무시했다.

한편, $t=2$ 시점에서 투자종료 후 자산과 자본은 <그림 5>와 같다. 투자액이 재투자되었으므로 $t=2$ 의 기업소득은 $B(1+qr)$ 로 증가한다. $t=2$ 시점에서 대주주의 부는 보유한 주식가치로, $\{S + B(2+qr)\}k$ 가 된다.

<그림 5> 투자 이후 $t=2$ 시점의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 + B\{2 - q(1-r)\}$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 Bq$		
		기업소득($t=1$)	B
		기업소득($t=2$)	$B(1+qr)$

(2) 유보이익을 배당한 경우 각 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한편, 기업소득의 일정비율(q)만큼 배당(D)을 수행한 경우 $t=1$ 시점의 자산(A)과 자본(S)은 <그림 6>과 같다. 배당액($D=qB$)만큼 유동자산은 감소하며, 비유동자산은 그대로이다. 또한 자본의 크기는 사외유출 된 배당액만큼 감소한다.

<그림 6> $t=1$ 시점 배당이 수행된 후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 + B(1-q)$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기업소득	$B(1-q)$

또한 배당 이후 $t=2$ 시점의 자산(A)과 자본(S)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배당 이후 $t=2$ 시점의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 + B(2-q)$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기업소득($t=1$)	$B(1-q)$
		기업소득($t=2$)	B

투자액이 없으므로 $t=2$ 의 기업소득은 B 로 동일하다. $t=2$ 시점에서 대주주의 부는 $t=1$ 시점에서 받은 배당과 보유한 주식가치로, 이 둘을 합치면 $(S+2B)k$ 가 된다.

(3) 유보이익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 각 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만일 기업소득의 일정비율(q)만큼 임금인상($\Delta\omega$)을 수행한 경우 $t=1$ 시점의 자산(A)과 자본(S)은 <그림 8>과 같다. 임금인상액($\Delta\omega=qB$)만큼 유동자산은 감소하며, 비유동자산은 그대로이다. 또한 자본의 크기는 임금인상으로 사외유출 된 부분만큼 감소한다.

<그림 8> $t=1$ 시점 임금인상 후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B(1-q)$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기업소득	$B(1-q)$

임금인상 이후 $t=2$ 시점의 자산(A)과 자본(S)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임금인상 이후 $t=2$ 시점의 기업의 자산(A)과 자본(S)

유동자산	$cA+B(2-q)$	자본	S
비유동자산	$(1-c)A$	기업소득($t=1$)	$B(1-q)$
		기업소득($t=2$)	B

투자액이 없으므로 $t=2$ 의 기업소득은 배당과 마찬가지로 B 이다. $t=2$ 시점에서 대주주의 부는 보유한 주식가치로, $\{S+B(2-q)\}k$ 가 된다.

(4) 투자, 배당 및 임금인상에 따른 $t=2$ 시점의 대주주의 부(wealth)의 비교

$t=2$ 시점에서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으로 인한 대주주의 부를 비교해보면 식 (6)과 같다.⁴⁾

4) 위 모형에서 대주주에 대한 배당은 투자기회를 반영하지 않았다. 만일 배당의 투자수익률이 유보소득의 재투자수익률과 같거나 높다면 투자와 배당의 순서효과는 바뀔 수 있다. 또한 유보소득의 재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면, 기업은 투자보다는 배당을 선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frac{\{S+B(2+qr)\}k}{\text{투자}} \geq \frac{(S+2B)k}{\text{배당}} > \frac{\{S+B(2-q)\}k}{\text{임금인상}} \quad (6)$$

식 (6)에 의하면, 의사결정자인 대주주 입장에서 유보소득이 재투자되는 투자의 경우 부가 가 장 크며, 그 다음 배당이고 마지막으로 임금인상이다. 따라서 식 (6)을 통해 유보이익을 사용할 때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는 순서효과(pecking order)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원하고 투자 및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함인 그 목적이다. 만일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적용대상 기업은 법인세율의 약 3%가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투자와 배당 및 임금인상 중 어느 부분에 대한 지출을 먼저 증가시킬지 살펴본다.

첫째, 투자의 경우 임금인상이나 배당이 없다고 가정할 때 신규투자금액이 당기순이익(기업 소득)의 약 50%이상이어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감소가 발생하며, 최대 80%이상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의 투자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⁵⁾

둘째,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을 원칙으로 하여, 자사주매입도 배당의 형태로 보았다.⁶⁾ 금전배당이나 자사주매입의 증대는 기업소득의 유출이므로 자금이 순환되는데 도움이 되며, 가계소득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다.⁷⁾ 하지만 배당소득의 혜택은 주로 대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특히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급여를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면 임금인상보다는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임금인상의 경우이다. 이 부분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인상을 수행하면 다시 내리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방식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법인세액을 절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합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해당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은 세 가지 선택,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배당, 임금인

5) 2015년 2월 발표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에서는 해외투자자와 주식인수를 제외하고 설비, 연구개발 투자 뿐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도 투자로 보았다.

6) 하지만 금전배당이나 자사주매입으로 인한 주주 부의 증진은 주로 대주주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처럼 가계소득의 환원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7) 한편 배당은 기업의 수익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으나 배당정책과 과세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Fama and French 1998).

상 순으로 선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추가적 법인세 부담액을 절감하기 위해 투자의 내부유보효과를 이용해 투자를 배당이나 임금인상에 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 금전배당 및 자사주매입, 마지막으로 임금인상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는지 여부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작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은 유동성이 가장 크며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기업이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려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는 다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는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가 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로, 예를 들어 국외현지법인의 수익을 국내기업에 송금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에서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셋째, 경영자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추가적 투자기회가 생겼을 때 재량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대리인 동기(agent motive)등이 있다.

Opler et al.(1999)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현금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성장기회가 높고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김병기(2004)는 상장기업의 적정현금보유수준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현금흐름 및 순운전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위험이 클수록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이 높았다.

이처럼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기업의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이 넘는 유보소득의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임금,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편, 기업의 유보소득은 현금성자산의 형태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배당, 임금의 증대를 강요한다면 기업은 추가적 자본조달로 인해 재무구조 및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보소득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므로 추가적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들도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정기영과 정재원(1990)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로 인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는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 이준규과 이은상(1996)은 법인이기업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초과소득에 대해 기업발전적립금의 형태로 사내 유보하고 있어 법인세 과세의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권봉상 등(1999)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당기의 재무구조(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와 소유지배구조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 많이 납부한 기업과 적게 납부한 기업집단의 부채규모는 큰 반면에 중간그룹의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기업의 규모와 지분구조 변수를 교호작용시켜 분석하였으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기업규모, 소유지분구조에는 영향을 없음을 보였다. 양대석과 이병철(2001)의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와 재무구조개선과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자부담율, 총자본경상이익율, 매출채권회전율, 당좌비율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했다. 반면에 기업은 기업발전적립금 등을 통해 적정유보초과과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배당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도입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기호와 문예영(2015)은 상호출제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사업연도소득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함으로써 사내유보과세의 실용성을 검증했다. 유보소득의 과세대상 기업의 경우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극히 일부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실효성 분석에서는 대상기업들이 해당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에서 230억 원의 신규투자, 임금 증가, 추가배당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관계회사와 거래 또는 기간별 소득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부담이 높은 기업들은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지(2015)의 경우에도 2014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기업은 환류세제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성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홍영도와 김갑순(2015)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들이 제도의 발표 전후 배당증가에 따른 투자 수요증가로 인해 누적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하는 검증한 결과 세제개편 후 누적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하였음을 보였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배당증가가 아닌 조세정책에 의해 유도된 배당의 증가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문철과 전영순(2015)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유보이익과 기업가치 사이에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한편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현금배당을 증가시키게 되면 대리인비용으로 인해 기업 가치 감소가 완화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배당을 통해 비생산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높은 유보 이익을 사외유출시킴으로써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 장기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은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사내유보이익을 과다 보유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추정치를 가지고 관련 효과에 대해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법인이 해당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유보소득 사용의 순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I.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사례분석

1. 사례기업의 기초자료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의 부담을 확인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자가 유보소득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보유형태를 살펴보고 사례기업의 사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가 A방법과 B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례기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기업 A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매년 말 자기자본의 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15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추가적 법인세의 부담을 A방법과 B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중견 제조기업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사례기업 A사는 제조기업이며 지속적 제품개발을 위해 매년 많은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사례기업의 요약 재무자료

<표 4>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례기업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 및 배당금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Panel A에서는 사례기업 A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재무상태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자기자본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은 160,104백만 원, 2012년

은 170,793백만 원, 2013년에는 177,062백만 원, 2014년은 180,641백만 원으로 계상되므로 법인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Panel B는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2011년 18,196백만 원, 2012년 12,468백만 원, 2013년 7,218백만 원, 2014년 6,273백만 원이 계상되었다. Panel C에서는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지급내역을 요약하였다. 사례기업의 경우 주식배당은 없으며 배당금 전체를 현금으로 배당하였다. 배당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은 현금배당 1,898백만 원,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은 189백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11%를 처분하였으며 2012년은 현금배당 1,265백만 원, 이익준비금 126백만 원으로 11%, 2013년에는 현금배당 1,013백만 원, 이익준비금 101백만 원으로 15.4%, 2014년에는 현금배당으로 1,013백만 원, 법정적립금으로 101백만 원으로 17.6%를 처분하였다.

〈표 4〉 사례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Panel A : 재무상태표 (2011년~2014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동자산	98,183	66,206	77,276	73,504
현금 및 현금성자산	61,739	20,620	45,304	1,13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9,794	12,307	10,191	11,350
재고자산	16,079	13,240	21,468	19,990
비유동자산	113,266	144,685	146,183	143,156
유형자산	45,349	46,689	49,099	50,182
감가상각누계액	△17,565	△18,733	△20,673	△22,212
무형자산	1,020	631	714	714
무형자산 상각비	△76	△110	△150	△196
자산총계	211,449	210,891	223,459	216,660
부채총계	51,345	40,098	46,397	36,019
자본금	6,500	6,500	6,500	6,500
자기주식	△2,577	△2,563	△2,487	△2,487
이익잉여금	98,163	108,735	114,686	119,946
자본총계	160,104	170,793	177,062	180,641

〈표 4〉 사례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계속)

Panel B : 손익계산서(2011년~2014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 출 액	164,779	169,011	115,554	110,920
매출원가	136,921	149,434	102,798	99,449
매출총이익	27,859	19,577	12,756	11,470
판매비와관리비	7,789	3,158	6,340	6,189
영업이익	20,070	11,942	6,416	5,280
영업외수익	7,207	5,421	4,614	4,200
영업외비용	3,522	1,518	1,803	1,22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754	15,844	9,228	8,261
법인세비용	5,558	3,376	2,010	1,987
당기순이익	18,196	12,468	7,218	6,273
기타포괄손익	928	100	247	△1,680
당기포괄이익	19,125	12,569	7,465	4,592

Panel C : 이익잉여금 변동 및 배당금 지급내역(2011년~20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처분이익잉여금	97,215	107,595	113,421	118,58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019	95,127	106,204	112,307
당기순이익	18,196	12,468	7,218	6,273
이익잉여금처분액	2,087	1,392	1,114	1,114
법정적립금	189	126	101	101
현금배당금	1,898	1,265	1,013	1,013
주식배당금	0	0	0	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95,127	106,204	112,307	117,465

나. 사례기업의 기업소득 산정 기초자료

〈표 5〉는 사례기업의 기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업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Panel A에서는 사례기업의 각 연도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2011년 23,772백만 원, 2012년 16,053백만 원, 2013년 9,717백만 원, 2014년 8,414백만 원이다. Panel B에서는 기업소득 산정과정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

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사례기업에서는 국세등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규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 금액으로서 A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사례기업의 연도별 기업소득 산정자료

Panel A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당기순이익	18,196	12,468	7,218	6,273
①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3,134	5,089	4,415	5,564
②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17,658	1,504	1,915	3,423
2. 차가감소득금액	23,772	16,053	9,717	8,414
① 기부금한도초과액	0	0	0	0
② 기부금한도초과액이월액 손금산입	0	0	0	0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3,772	16,053	9,717	8,414
Panel B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가산항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세 등 환급금에 대한 이자	0	0	0	0
수익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0	0	0	0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0	0	0	0
투자 (유형)자산 감가상각분	22	112	199	219
투자 (무형)자산 감가상각분	0	1	6	6
합 계	22	113	205	225
Panel C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감항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세 등	6,080	3,376	2,010	1,988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189	126	101	101
법령상 의무적립금	0	0	0	0
이월결손금 공제액	0	0	0	0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등	0	0	0	0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0	0	0	0
R&D 준비금 익금산입액	0	0	0	0
합 계	6,269	3,502	2,111	2,089

다. 사례기업의 미환류소득 산정 기초자료

<표 6>은 사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요약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소득에서 기계장치 등 세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이 투자한 금액과 전년도 비교 임금증가 금액 및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100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A방법과 B방법의 차이는 기계장치 등 세법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A방법에서는 차감하고 B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Panel A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과 신규취득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요약한 사항이다. 유형자산 자료에는 신규취득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였다. 사례기업의 연도별 유형자산 신규투자금액을 보면 2011년 3,237백만 원, 2012년 1,477백만 원, 2013년 3,613백만 원, 2014년 1,312백만 원이다. 아래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금액으로서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Panel B는 사례기업의 무형자산 신규 투자금액이다. 2011년은 141백만 원, 2012년은 27백만 원, 2013년에 7백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2014년 신규 투자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액의 계상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된 금액이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무형자산상각비와는 차이가 있다. Panel C는 임원 및 직원의 연도별 근로소득 지급내역이다. 2011년 임원급여를 제외한 임금은 8,172백만 원이고 2012년에는 7,974백만 원으로 2011년에 비해 225백만 원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7,945백만 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29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7,681백만 원으로 2013년보다 264백만 원 감소하여 사례기업의 경우 연도별 임금지급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임금증가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Panel D는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과 상법의 규정에 따라 현금배당에 대한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의 처분액과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기업의 배당에는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배당은 발생하지 않고 현금배당만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1년의 자기주식은 취득 후 1개월 이내 즉시 처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발생한 금액은 없다.

〈표 6〉 사례기업의 연도별 미환류소득 산정자료

Panel A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 자료

(단위 : 백만원)

2011년 신규취득 사업용 유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계장치	99	3	10	10	10
차량운반구	2	1	0	0	0
공구와기구	137	9	23	23	23
비 품	224	9	27	27	27
건설중인자산	2,775	0	0	0	0
합 계	3,237	22	60	60	60
2012년 신규취득 사업용 유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2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속토지	6		0	0	0
건 물	3		0	0	0
구 축 물	51		3	3	3
기계장치	488		40	44	44
비 품	183		9	22	22
건설중인자산	736		0	0	0
합 계	1,477		52	69	69
2013년 신규취득 사업용 유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3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속토지	9			0	0
건 물	107			3	3
구 축 물	42			3	3
기계장치	1,126			48	48
차량운반구	114			14	19
비 품	47			2	9
건설중인자산	1,168			0	0
합 계	2,613			70	82
2014년 신규취득 사업용 유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4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계장치	171				3
차량운반구	351				4
비 품	25				1
건설중인자산	765				0
합 계	1,312				8

〈표 6〉 사례기업의 연도별 미환류소득 산정자료 (계속)

Panel B : 신규 무형자산 취득 자료					(단위 : 백만원)
2011년 신규취득 무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 원 권	141	0	0	0	0
합 계	141	0	0	0	0
2012년 신규취득 무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2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프트웨어	27		1	5	5
합 계	27		1	5	5
2013년 신규취득 무형자산					
과 목	취득원가	2013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프트웨어	7			1	1
합 계	7			1	1
Panel C 임직원에 대한 임금 증가액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조원가	6,580	6,254	6,137	6,653	
판매비 및 관리비	3,190	3,158	2,871	2,284	
임원 급여	1,598	1,438	1,063	1,256	
계	8,172	7,974	7,945	7,681	
증감액		△225	△29	△264	
Panel D : 배당금액 지급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금배당액	1,898	1,265	1,013	1,013	
주식배당액	0	0	0	0	
법정적립금	189	126	101	101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1,554	0	0	0	

2. 기업소득과 미환류소득 및 법인세 계산

가. A방법 적용 기업소득 산정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정방법은 A방법과 B방법 중 기업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의 계산에 있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소득의 산출시 기계장치 등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다음의 <표 7>에서는 사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중 A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사례기업의 기업소득은 2011년 17,525백만 원, 2012년은 12,264백만 원, 2013년은 7,811백만 원과 2014년 6,549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사례기업의 경우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매년 감소하였으므로 기업소득도 매년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산항목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된 금액 중 신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다.

<표 7> A방법에 의한 연도별 기업소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23,772	16,053	9,717	8,413
2. 가산항목				
① 국세등 환급금 이자	0	0	0	0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0	0	0	0
③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0	0	0	0
④ 유형자산 감가상각분	22	112	199	219
⑤ 무형자산 감가상각분	0	1	6	6
3. 차감항목				
① 법인세액 등	6,080	3,376	2,010	1,988
②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189	126	101	101
③ 법령상 의무적립금	0	0	0	0
④ 이월결손금 공제액	0	0	0	0
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0	0	0	0
⑥ R&D준비금 익금산입액	0	0	0	0
4. 기업소득	17,525	12,264	7,811	6,549

그리고 차감항목 중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10%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것이며 사례기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산 및 차감항목은 없다.

나. A방법 적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표 8>에서는 A방법에 의한 기업소득에 80%의 일정률을 곱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과세대상소득은 2011년에 14,020백만 원, 2012년 10,131백만 원, 2013년 6,249백만 원, 2014년은 5,239백만 원이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각 연도별 환류금액을 살펴보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2011년에 3,378백만 원, 2012년 1,504백만 원, 2013년 2,620백만 원, 2014년에 1,312백만 원이며 현금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1년에 3,452백만 원, 2012년 1,265백만 원, 2013년 1,013백만 원, 2014년 1,013백만 원이며, 연도별 임금증가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임금증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례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추가적 인원 충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연도별 미환류소득은 2011년 7,190백만 원, 2012년 7,362백만 원, 2013년 2,623백만 원 및 2014년 299백만 원이며, 2011년을 최초 적용이라고 가정한다면 미환류소득은 전액 차기미환류적립금으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음으로 201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2년에는 환류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생하게 되는 추가 법인세는 1,455백만 원 2013년에는 262백만 원, 2014년에는 30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8> A방법에 의한 연도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기업소득	17,525	12,264	7,811	6,549
2. 적용률	80%	80%	80%	80%
3. 과세대상소득	14,020	10,131	6,249	5,239
4. 신규투자(유형자산) 금액	3,237	1,477	2,613	1,312
5. 신규투자(무형자산) 금액	141	27	7	0
6. 임금증가금액	0	0	0	0
7. 현금배당금액	3,452	1,265	1,013	1,013
8. 미환류소득	7,190	7,362	2,623	299
9. 차기미환류적립금	7,190			
10. 세율	10%	10%	10%	10%
1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	1,455	262	30

다. B방법 적용 기업소득 산정

<표 9>에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B방법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을 산출한 것이다. B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산항목에 유형 및 무형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B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업소득은 2011년 17,053백만 원, 2012년 12,551백만 원, 2013년 7,606백만 원, 2014년 6,324백만 원이다.

〈표 9〉 B방법에 의한 연도별 기업소득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23,772	16,053	9,717	8,413
2. 가산항목				
① 국세등 환급금 이자	0	0	0	0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0	0	0	0
③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0	0	0	0
3. 차감항목				
① 법인세액 등	6,080	3,376	2,010	1,988
②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189	126	101	101
③ 법령상 의무적립금	0	0	0	0
④ 이월결손금 공제액	0	0	0	0
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0	0	0	0
⑥ R&D준비금 익금산입액	0	0	0	0
4. 기업소득	17,503	12,551	7,606	6,324

라. B방법 적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표 10>에서는 B방법에 의한 기업소득에 30%의 일정률을 곱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였다. 연도별 과세대상소득은 2011년 5,251백만 원, 2012년 3,765백만 원, 2013년 2,282백만 원, 2014년 1,897백만 원이다. 임금증가액과 현금배당액은 A와 동일하며, 적용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차기미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다. B방법에 의한 미환류소득은 2011년은 1,799백만 원, 2012년 2,500백만 원, 2013년 1,269백만 원, 2014년 884백만 원이다. 그리고 B방법 적용을 선택하였으므로 차기미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2011년 미환류소득 전부를 적립하였다. 각 연도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발생액은 2012년 430백만 원, 2013년 127백만 원, 2014년

88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A방법과 비교할 때 사례기업의 경우 B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B방법에 의한 연도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기업소득	17,503	12,551	7,606	6,324
2. 적용률	30%	30%	30%	30%
3. 과세대상소득	5,251	3,765	2,282	1,897
4. 임금증가금액	0	0	0	0
5. 현금배당금액	3,452	1,265	1,013	1,013
6. 미환류소득	1,799	2,500	1,269	884
7. 차기미환류적립금	1,799			
8. 세율	10%	10%	10%	1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	430	127	88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교

<표 11>에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A방법과 B방법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차이가 없으나 2012년에는 약 1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B방법이 유리하다. 해당기업의 경우 제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액이 당기순이익(사업소득)에 비해 작기 때문에 B방법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미환류소득에 대한 A와 B방법의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A방법	23,772	16,053	9,717	8,413
	B방법	23,772	16,053	9,717	8,413
	차 이	0	0	0	0
2. 기업소득	A방법	17,525	12,264	7,811	6,549
	B방법	17,503	12,551	7,606	6,324
	차 이	22	△287	205	225

〈표 11〉 미환류소득에 대한 A와 B방법의 비교 (계속)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 과세대상소득	A방법	14,020	10,131	6,249	5,239
	B방법	5,251	3,765	2,282	1,897
	차 이	8,769	6,366	3,967	3,342
4. 신규투자금액	A방법	3,378	1,504	2,620	1,312
	B방법	0	0	0	0
	차 이	3,378	1,504	2,620	1,312
5. 임금증가액	A방법	0	0	0	0
	B방법	0	0	0	0
	차 이	0	0	0	0
6. 현금배당금액	A방법	3,452	1,265	1,013	1,013
	B방법	3,452	1,265	1,013	1,013
	차 이	0	0	0	0
7. 미환류소득	A방법	7,190	7,362	2,623	299
	B방법	1,799	2,500	1,269	884
	차 이	5,391	4,862	1,354	△585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A방법	0	1,455	262	30
	B방법	0	430	127	88
	차 이	0	1,025	135	△58

4. 사례기업의 미환류소득의 사용에 대한 순서효과

위 기업은 투자와 배당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기업환류세제를 적용하기 전이므로 이 세제가 유보소득의 사용에 어떠한 순서효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유추한다면 회사의 투자액이 작으므로 배당으로 인한 기업환류세제의 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액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작은 기업의 경우, 주로 배당의 지급을 통해 미환류소득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

IV.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법인세의 과세는 2015년 귀속부터 적용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고 투자와 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기업의 법인세율이 최대 3% 인상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의도한 것처럼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해 투자와 배당이 증대되고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해당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인 노력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투자자산 관련 개선방안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유보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투자부분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액의 산정시 다음과 같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이 유보이익을 가지고 있고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기 이후 새로운 투자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제 하에서 차기투자를 위해 기업이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의 해당 세제는 차기에 구체적인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경우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투자액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기 투자처로 인해 유보하였음을 자료로 제출한 일시적인 유보소득은 투자액으로 인정하고 만일 제출한 투자계획이 추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환류소득의 계산에서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까닭은 기업의 유보소득이 국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세제로 인해 해외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경우라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이를 해당 세제에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투자에서 지분취득의 경우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때 지분투자는 최근 들어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해당 세제가 지분취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인수 및 합병(M&A)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신규투자자와 같은 실질을 지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액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5년 2월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기업이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액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그 자체로 향후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의 취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액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기업소득의 이전을 통해 본래의 세제 취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실질적 투자처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임금증가액 관련 개선방안

미환류소득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된 금액만큼을 임금증가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증가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의 급여는 임금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절감을 위해 투자와 배당 다음으로 임금을 고려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 목표인 자금의 환류,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기가 어려움을 암시한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을 위한 유인을 세제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액이나 배당에 비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가중치(예 : 동일한 금액이라도 투자나 배당 대비 2배를 산식에서 공제)를 부여한다면 기업은 투자 또는 배당보다 임금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임금인상의 경우 하방경직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환류세제 산식에서 임금인상분을 고정급과 성과급에 따른 가중치에 차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즉 고정급의 상승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높이므로 기업에게 추후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⁸⁾ 따라서 동일한 임금인상이더라도 고정급의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중치를 주어 성과급 배분과 같은 일시적 임금인상에 비해 보다 우선적 혜택을 주어야 기업환류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임원인 최대주주 등의 급여를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면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고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근로소득에 비해 낮게 계산되는 결과가 되므로 최대주주는 적은 경제적 부담만으로 많은 소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자인 기업들이 대다수 이므로 해당 세제에서는 임금인상보다는 배당소득을 선호할 수 있으며, 당초 정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일부 지배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적용방법의 선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은 A방법과 B방법으로 투자액이 있는 기업의 경

8) 또한 고정급의 인상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인책을 줄 필요가 있다.

우 적법하게 신고한다면 기업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최초 선택한 방법을 3년 동안 계속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3년간 동일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2015년에는 투자계획이 없어 B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나, 차기 이후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유보이익을 사외로 환류하는 것이지만, 미환류소득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 부담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방법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용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4.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실질적으로 현금의 지출이 발생된 비용이며, 기업소득이 외부로 이전된 경우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의 소득으로 계산되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내유보 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미환류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금액은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⁹⁾

V. 결 론

기업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배당 및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다.¹⁰⁾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익을 재투자, 배당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정규모 이상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의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낮아진 반면, 기업

9) 물론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시 접대비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면 사회전반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접대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세제의 개편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기업환류세제는 2015년 개정되어 2017년 일몰되기로 한 한시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유보소득 사용으로 인한 경기활성화와 근로소득 증가를 위해 입법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 기업환류세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세제의 이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득은 1995년 16.6%에서 2012년 23.3%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유보하고 임금인상이나 배당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소득 배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노동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모형을 통해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절감을 위하여 유보소득 중 임금 인상보다는 투자나 배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순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작동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투자부분이다. 특히 해외투자나 주식인수는 투자에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는 제외하여 기업의 실질적 투자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은 투자와 배당에 비해 기업이 수행할 유인이 가장 작으므로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 취지인 가계소득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비해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환류세제의 취지인 유보소득의 사용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효과와 기업의 임직원의 실질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방법의 재량적 선택이 필요하며 이미 기업외부로 유출된 기부금 등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투자액임을 밝혔으며,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는 순서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했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모형의 가정의 엄격함으로 인해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예 : 유보소득의 투자수익률과 배당의 재투자수익률) 순서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례연구의 성격상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봉상 · 이병철 · 양대석. 1999.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집 : 123-146.
- 김문철 · 전영순. 2015.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 제3호 : 737-765.
- 김병기. 2004. “상장기업의 현금보유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공학연구 제3권 제2호 : 147-170.
- 양대석 · 이병철. 2001.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집 : 87-111.
- 이예지. 2015.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101-133.
- 이준규 · 이은상. 1996. “이중과세와 조세의 중립성”. 세무학연구 제7호 : 31-62.
- 정기영 · 정재원. 1990. “법인세가 기업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0호 : 35-59.
- 홍영도 · 김갑순. 2015.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주가수익률”.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 231-260.
- 최기호 · 문예영. 2015.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상호출제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 9-38.
- 최선집. 1998. 『논점 조세법』, (주)조세통람사.
- Fama, E. F., and K. R. French. 1998. Taxes, Financing Decisions and Firm Value. *Journal of Finance* 53 : 819-945.
- Opler, T., L. Pinkowitz, Rene Stulz, and Rohan Williamson. 1999. Th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Cash Hold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2 : 3-46.

Economic Effect of Corporate Income Refund Tax

- Order Effect of Retained Income and the Improvement Plans -

Hyuk Shawn* · Youn-hwa Kim**

〈Abstract〉

Corporate income reflux tax, that is, tax income taxation for non-reflux is introduced in 2015 to encourage firms to take advantage of investment income, wages, dividends. In recent years, Korea has increased the share of corporate income while labor income of GDI gradually declines. Corporate income tax reflux contributes to the economy in terms of corporate income reflux. However, firms will focus on the investments or dividends rather wage increase to reduce the corporate income reflux tax. This study analyses a case of listed companies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orporate income reflux tax.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he investment part, and to recognize the investment as the United States, even if firms do not invest in the current period but submit data on the obvious next invest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admit substantial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and stock acquisition, except commercial real estate investments. Third, firms feel incline to do the investments and dividends, rather than to raise wages. Therefore, It need to assign a weight to the raise of wage through the corporate income tax reflux. Fourth,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giving firms a discretion to report corporate income tax reflux every year. This research has contribution to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corporate income tax reflux over a case.

〈Key words〉 Corporate income reflux tax, retained earnings, internal reserv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hshaw@kmu.ac.kr, First Author

** Lecturer, Department of Accounting,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happyday4057@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